

# 보도자료



보도	2019.11.22.(금) 11:30	배포	2019.11.22.(금)
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

	금융위 공정시장과장 김 연 준(02-2100-2680) 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손 영 채(02-2100-2650) 금융위 기업회계팀장 김 선 문(02-2100-2690)		박 석 훈 사무관 (02-2100-2682) 나 혜 영 사무관 (02-2100-2652) 장 원 석 사무관 (02-2100-2693)
책 임 자		담 당 자 ·	
	이 관 재(02-3145-8100)		(02-3145-8475)
	금감원 신용정보평가실장 권 민 수(02-3145-7850)		임 권 순 팀장 (02-3145-7855)

# 제 목 : 공시 · 회계, 자본시장 인프라 등 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성과 (심층심의 대상 규제 39건 중 30건 개선 결정)

- 금융위는 오늘 기존규제정비위원회(위원장 : 금융위 부위원장)
 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공시·회계·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136건의
  규제에 대해 심의
  - 이 중 업계가 규제로 인식하지 않거나 존치이유가 명백한 규정은 **선행심의**(97건)로 분류하고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였고,
  - 존치 필요성 외에도 적정성·개선방안까지 집중 심사가 필요한 규제는 <u>심층심의 대상으로 선정(39건)</u>하고 오늘 회의에서 중점 논의하여 **이중 30건을 개선(76.9%)**하기로 심의·의결하였음
- ◈ 개선 과제는 '20년 상반기 중 개정(안)을 입법예고할 예정
  - \* 다만,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(예 : 자산유동화 업무 감독규정 등) 관련 법령 정비 이후 신속하게 감독규정 개정 추진
- ◈ 금융위는 자본시장 분야에 이어 연내 금융산업, 전자금융 등 타 업권도 순차적으로 규제를 점검, 개선을 추진할 계획

## 1 추진 경과

- □ 정부는 **담당공무원**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**입증실패시** 규제를 폐지·완화하는 「규제입증책임제」를 추진중('19.1월~)
  - \* '19.1.15. 대통령 주재 '기업인과의 대화'시 건의사항 반영
- □ 금융위는 총 **1,100여건의 명시적·비명시적 규제를 전수 점검** 중이며, 명시적 규제(789건)는 「기존규제정비위원회<sup>\*</sup>」를 통해 정비<sup>\*\*</sup> 중
  - \* 금융위 부위원장(위원장). 규제·금융정책 전문가. 경제계 추천 인사 등 15명
  - \*\* 보험('19.5월). 자본시장('19.6월~) 등 업권별 순차적으로 점검
  - (보험) 총 98건의 규제 중 심충심의\*가 필요한 31건을 검토 하여 23건을 개선(74.1%)하는 것으로 확정·발표('19.5월)
    - \* 존치 필요성외에도 규제수준의 적정성. 개선방안 등까지 집중 심의
  - (자본시장) 국조실 등록 규제 총 330건을 중심으로 증권(8월),
    자산운용(9월) 분야 개선을 완료
    - **증권업**은 심층심의과제 28건 중 19건을 개선(67.9%, '19.8월), **자산운용업**은 심층심의과제 29건 중 24건을 개선(82.8%, '19.9월)
- □ 공시·회계분야, 자본시장 인프라 등 분야는 협회 및 업계관계자 등으로부터 규제 136건\*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,
  - \* 등록규제 133건 + 미등록 규제 3건
  - 이 중 총 30건\*의 개선과제를 규제정비위에 상정·의결
    - \* 공시·회계분야 17건, 자본시장 인프라 등 분야 13건

#### 【기존규제정비위원회 회의 개요】

- (일시 및 장소) `19.11.22.(금), 10:00~11:00,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
- (주요 참석자) 금융위원회 부위원장(위원장), 사무처장, 기획조정관, 자본 시장정책관, 민간위원 5인 등 총 9인
- (주요 내용) 규제 존치 필요성 검토 및 개선방안 논의

## 2 공시·회계, 자본시장 인프라 등 분야 성과

- □ (개선율) 총 136건의 규제를 선행심의\*(97건) 및 심층심의\*\*(39건) 대상으로 구분하고, 심층심의 대상 39건 중 30건(76.9%)을 개선
  - \* 업계가 규제로 인식하지 않거나. 법령상 단순세부사항을 정한 경우 등
  - \*\* 존치 필요성 외에도 적정성·개선방안까지 집중 심사가 필요한 규제

#### < 심의결과 요약 >

**존치**(B)

9건

개선율(=A/[A+B])

76.9%

대상규제	선행심의	심층심의	<b>개선</b> (A)
136건	97건	39건	30건

- □ (유형별) 금투업 영업행위 및 증권의 발행 분야가 최다(각각 6건) 이며 신용평가 및 공시(각각 5건), 자산유동화(4건) 등 順
  - 개선율은 신용평가·자산유동화가 동일하게 가장 높으며(100%),
    금투업 영업행위 및 증권의 발행(86%), 외부감사(75%) 등 順

#### < 규제 유형별 심의결과 >

구분		대상	선행	심층심의		
		규제	심의	개선 (A)	<b>존치</b> (B)	개선율 (=A/[A+B])
	공시·단기매매차익 등	25	18	5	2	71%
	외부감사 및 회계	18	14	3	1	75%
공시·	신용평가	7	2	5	0	100%
회계 등	자산유동화	17	13	4	0	100%
	M&A 등	8	7	0	1	0%
	소계	75	54	17	4	81%
	금융투자업 영업행위	7	0	6	1	86%
자본시장 인프라 등	공매도, 외국인 증권 거래, 금융 투자업 관계기관 등	24	20	1	3	25%
	증권의 발행	30	23	6	1	86%
	소계	61	43	13	5	72%
	합계	136	97	30	9	77%

# 3 주요 개선과제(총 30건)

#### 1. 공시·회계 분야 개선과제 (총 17건)

◇ 공시·회계분야는 선행심의 과제 21건 중 17건을 개선(81%)

#### 1. 신용평가업 분야 규제 합리화

- ① <u>신용평가업</u> 전문인력요건을 '자격증 소지자 기준'에서 금투업과 같이 '세부업무별 전문인력 기준\*'으로 변경 [금투업규정 8-19의2]
  - \* 금투업 인력요건은 필요인력의 요건을 세부업무별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자격증. 경력 등을 반영

<현행>			<개선(예)>		
공인회계사 (A)	증권 본 보 평가 경력자(B)	전문인력 (A, B 포함)	기업평가 전문인력	금융평가 전문인력	구조금융평가 전문인력
- 5명 이상	5명 이상	20명 이상	 ○명	△명	□명

- ② <u>신용평가업</u> **내부통제기준**을 금감원장이 정하는 방식에서 금투업과 마찬가지로 **협회 자율규제**로 변경 [금투업규정 8-19의7]
- ③ <u>신용평가업 부수업무\*</u> 관련, 법령상 Negative 방식이 충실히 구현되도록 조치(유권해석, 비조치의견서 활용) [금투업규정 8-19의8]
  - \* 법령은 법령상 열거된 업무 외 부수하는 업무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실무상 열거되는 업무만 영위하는 것으로 운영해오고 있음
- 4 <u>구조화금융\*</u> 신용평가에 있어, 실질적 작성주체(자산보유자 등)에게 자료작성 확인의무를 부여하여 책임 명확화 [금투업규정 8-19의10]
  - \* 구조화 금융의 SPC 대표이사는 자료작성 및 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확인서 징구 등 관련책임을 부여

### 5 **일부서류 제출시기 완화**\* [금투업규정 8-19의11]

\* 신용평가실적서, 신용등급변화표, 평균누적부도율표 제출 기한 연장 : 10일/20일 이내 → 1개월 이내

#### 2. 자산유동화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

#### ⑥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시 **사전심의·반려 등을 금지** [유동화규정 3]

\* 단, 서류의 미비·허위 등이 있는 경우 금감원이 심사과정에서 반려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

#### 7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신청시 세부내용 간소화 [유동화규정 4]

\* ①자산보유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기재내용은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은 참조 방식으로 개선. ②유동화자산의 평가내용은 간소화

#### 图 경미한 계획변경은 단순 정정방식으로 간소화 [유동화규정 6]

\* 현재 경미한 사항의 변경시 최초 등록에 준하는 수준의 등록이 필요하여 업무과중 발생

## 9 <u>자산유형별 특성이 투자자 등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</u> 평가의견서를 자산유형별로 구체화 [유동화규정 8]

\* 외부평가 기관의 평가의견서가 자산구분 없이 정형화되어 구체성이 떨어지고 투자자보호가 미흡하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어 왔음

### 3. 공시 및 단기매매차익 제도 합리화\*

※ 과제 11 ~ 14 은 기발표된 내용임

## 10 주식보유의 경영참여 목적 등을 가늠하는 '중요한 영업양수도' 판단기준을 합리화 [증발공규정 3-13]

#### < 개선 전후 비교 >

중요도 기준 현 행		개선후
양수도 영업부문 자산액	자산총액의 10%이상	자산총액의 10%이상
양수도 영업부문 매출액	<b>자산총액</b> 의 10%이상	<b>전체 매출액</b> 의 10%이상
양수도 영업부문 부채액	<b>자산총액</b> 의 10%이상	<b>부채총액</b> 의 10%이상

- 11 주식 등의 대량보유보고와 관련, 공적연기금 등의 경우 자금 조달·운용이 엄격히 규제되고 투명하게 공개되는 점을 감안, 보고내용 합리화 [증발공규정 3-10]
  - \* 공적연기금은 보유형태, 자금조성경위 등이 잘 알려져 있어 추가 공개 실익이 거의 없음
- 12 경영참여 목적이 없는 5%를 공시특례 관련, 일률적 특례허용이 아닌 **주주활동 적극성** 등에 따라 **규제차별화** [증발공규정 3-14]
  - \* '경영참여' 목적이 없는 경우를 '일반투자'와 '단순투자'로 구분하고 공시 의무를 차등화하는 방안 추진중 (증발공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)
- 13 **E(환경)·S(사회적책임)·G(기업지배구조)**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 증가 등을 반영하여 공시항목을 **다변화**\* [증발공규정 4-3]
  - \* ①소속 외 근로자 현황 공시, ②핵심감사사항 등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논의사항 공시
- 14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이 증가한 만큼\*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염려가 없도록 차이니즈월 요건을 신설 [단차규정 8]
  - \* 현행 단차규정 상 공적연기금의 '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'이 아닌 온건한 주주활동은 단차 반환의무가 면제

### 4. 외부감사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

- 15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\* 허용 [외감규정 23]
  - \* 단,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만 감리에 착수하고,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
- 16 감사인 지정통지를 앞당겨(예: 11월 → 8월) 기업·회계법인에게 충분한 감사준비 기간을 부여 [외감규정 12 및 별표2]
- 17 기존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조직변경(예 : 유한회사 ↔ 주식회사)을 통해 외부감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규정 정비\* [외감규정 2]
  - \* 기존 외감대상 회사가 조직변경으로 신설된 경우, 신설 첫해부터 외감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화

### 2. 자본시장 인프라 등 분야 개선과제 (총 13건)

◇ 자본시장 인프라는 선행심의 과제 17건 중 13건을 개선(76%)

#### 1.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

- 18 중소·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등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순자본비율 산정방식을 개선 [금투업규정 3-14]
  - \* (예) 중소·벤처기업에 대한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의 경우 영업용 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위험값 적용 등
- 19 **종합금융투자사업자**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**단기금융** 업무를 통한 자금조달 한도(자기자본의 200%) 산정시 **혁신·벤처** 기업 투자금액은 제외 [금투업규정 4-102의7]
- ② 최종 청약자가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경우, 증권의 발행일로 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(단, 전문투자자로 한정)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모집으로 간주하지 않음[증발공규정 2-2]
- 21 중소·벤처기업의 소액공모 활용 활성화를 위해 **중소·벤처기업**에 한해 **소액공모 제출서류**를 **간소화**[증발공규정 2-17]
- 22 **코넥스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**를 위해 **일정요건\***을 충족 하는 경우 **신주 발행가액 산정의 자율성**을 부여[증발공규정 5-18]
  - \* ①(일반공모)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신주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②(제3자 배정) 신주발행 주식규모(전체 주식수의 20% 기준)에 따라 주주 총회(결의·특별결의)를 거치고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증자참여를 배제
- 23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모집·매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청약권유자 수 50인 산정시 제외되는 투자자 범위 확대 [증발공규정 2-2의]
  - \* ①PEF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영위를 위해 금융위에 등록한 PEF의 GP ②벤처기업육성법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·유한책임회사 및 외국투자회사

#### 2. 고객 수요 맞춤형 규제 정비

- 24 금융투자업자가 다양한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겸영업무에 '본인신용정보관리업'을 추가 [금투업규정 4-1]
  - \* 단,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'본인신용정보관리업' 영위의 근거가 되는 '신용정보법' 개정 이후 동 규정 개정
- 25 국제기구(WB, ADB 등)가 발행한 채권을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 (RP) 대상증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일정요건\* 충족시 증권 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[증발공규정 2-4의2]
  - \* ①2개 이상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A등급 이상
    - ②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가 채권의 시세. 발행인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
    - ③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채권의 기본정보, 투자위험 등을 시전설명
- 26 QIB 시장\*에서 거래되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외화 표시채권(KP물)에 대해 대고객 RP 편입을 허용[증발공규정 2-2의2]
  - \* 금융회사, 연기금 등 적격기관투자자(Qualified Institutional Buyer) 사이에 서만 거래 가능한 채권 시장

#### 3.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

- 27 <u>증권의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"가장 많은 수량의 인수"에 관한</u> 기준을 **명확화** [금투업규정 4-19]\_
  - \* (예) "가장 많은 수량"의 판단은 자본시장법 제119조제8항에 따른 "동일한 증권"을 기준으로 하되, 이를 세부회차별로 발행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적용 방법을 명확화
- 28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서 설명의무 등이 형식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투자자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\*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 [금투업규정 4-20]
  - \* (예) 서류 작성 시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행위. 투자자 성향 분류를 조작하는 행위 등

#### 4. 기타 정비사항

- ② 해외현지법인의 신설, 위치·상호·명칭·대표자 변경 등에 대해서는 현행 "7일이내" 보고에서 "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" 보고하도록 개선 [금투업규정 2-16]
  - \* 해외법인 관련 사항의 경우 해외 현지사정으로 인해 보고의무 이행을 위한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
- 30 <u>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 특례 적용시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이</u> <u>중발공규정(제4-13조)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금투업규정상</u> <u>동 조항은 삭제 [금투업규정 6-28]</u>

# 4 향후 추진계획

- □ 공시·회계,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규제입증책임제 후속 조치
  - 개선과제는 '20년 상반기까지 **관련규정 개정안 입법예고** 실시
    - 다만, **상위 법령 개정**이 필요한 경우\* 관련 법령 정비 이후 신속하게 **감독규정 개정 추진** 
      - \* 자산유동화 업무감독 규정 등
- □ 향후 금융위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일정
  - ㅇ 연내 금융산업, 전자금융 등 타업권도 순차적 추진 및 점검
  - 내년부터 법률, 시행령 등 법령 전반으로 규제입증책임제 확대 적용



 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 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



## "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"